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항 ‘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’ 앞에 ‘다음’을 삽입한다.

안 제2조(충청북도지사의 책무)를 신설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”

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‘대한적십자사’ 앞에 ‘도지사는’을 삽입하고, ‘지사’를 ‘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’로 하며, ‘필요한 설치’를 ‘필요한 공간의 설치’로 한다.

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를 각각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로 하고,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신설></p> <p>제2조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</p> <p>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<u>각 호의</u> 사항이 포함된 헌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 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제3조(헌혈장소의 설치지원) 대한적십자사 또는 <u>지사</u>에서 헌혈을 위한 장소 및 <u>필요한 설치</u>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</p> <p>①~③ <생략></p> <p>제5조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</p> <p><생략></p> <p>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</p> <p><생략></p> <p>제7조(시행규칙)</p> <p><생략>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<u>충청북도지사의 책무</u>)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<u>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3조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</p> <p>.....</p> <p>.....<u>다음 각 호의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~4. <제정안과 같음></p> <p>제4조(헌혈장소의 설치지원)<u>도지사는</u> 대한적십자사 또는 <u>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</u>에서 헌혈을 위한 장소 및 <u>필요한 공간의 설치</u>를 요청하는 때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</p> <p>①~③ <제정안과 같음></p> <p>제6조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</p> <p><제정안과 같음></p> <p>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</p> <p><제정안과 같음></p> <p>제8조(시행규칙)</p> <p><제정안과 같음>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